

[’17년 2차 (순경)채용시험 문제-경개론]

01.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<17.2채용>

-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상·학문상 정립된 개념이 아닌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,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.
- ②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.
-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.
-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경찰 활동을 의미한다.

정답: ④

해설:

- ① (X) -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**독일 행정법학에서** 경찰법상의 이른바 일반수권조항의 존재를 전제로 경찰관청에 대한 권한의 포괄적 수권과 법치국가적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**이론적·학문적 도구개념**으로 경찰개념범위의 무제한적 확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.[♣학문적 의미에서 고찰된 개념이 아닌(X), ♣실무상 확립된 개념(X)]<10·15·17승진·09·13·14경간·10·11.1·14.1·17.1채용>
- ② (X) - **일반 행정기관에 속하는 행정작용 중에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에 포함되는 것이 있는데** 이를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한다.[♣일반행정기관이 형식적 경찰기능(X)]<14승진·17.2채용>
- ③ (X) -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은 일부가 일치할 뿐, 양자의 범위는 일치하지 아니한다.[♣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.(X)]<15·16승진·11·14·17.2채용>
- ④ (O) - 형식적 의미의 경찰 : **실무상 확립된 경찰개념**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그 작용의 성질여하를 불문하고, **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(경찰행정기관)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**(경찰법§3, 경직법§2)를 달성하기 위한 보통경찰기관의 모든 경찰활동을 의미한다.[♣일반 행정기관도 형식적 의미 경찰 작용(X), ♣경찰관서에서 하는 일체의 경찰작용(O)]<10·15·16·17승진·06·07·14경간·05·07·08·10·12·15·17.2채용>

02.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<17.2채용>

- ① ‘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방지’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라 할 수 있다.
- ② 오늘날 대부분의 생활 영역에 대한 법적 규범화 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

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.

- ③ ‘공공의 안녕’이란 개념은 ‘법질서의 불가침성’과 ‘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’으로 나눌 수 있는 바, 이 중 ‘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’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.
- ④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.

정답: ③

해설:

- ① (O) - 경찰의 임무는 **행정조직법상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**[형식적 의미의 경찰]으로 **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(위험의 방지)**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이다.<05·09승진·03·17.2채용>
- ② (O) - 특히 오늘날의 규범의 성문화의 요청으로 인해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범위는 **점차 축소**되고 있다.<09승진·17.2채용>
- ③ (X) - ‘공공의 안녕’이란 **법질서의 불가침성,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의 불가침성,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으로** 구성되며, **법질서의 불가침성은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**로 공법 규범에 대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된다.[♣‘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’이 공공의 안녕의 제1의 요소(X)]<02·05·17.2채용>
- ④ (O) - 경찰의 개입(구체적 처분을 통한 개입 및 경찰상 법규명령을 통한 개입)은 **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** 가능하다.[♣경찰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(X)]<12경위·17.2채용>

03.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<17.2채용>

- ① 사회 전체가 경찰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은 부패 행위를 하게 되며 시민 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으로 보는 이론은 전체사회 가설이다.
- ② 일부 부패경찰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구조원인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이 아닌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파악한다.
- ③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.
- ④ 썩은 사과 가설은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사회화 되어 신임 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고 주장한다.

정답: ①

해설:

- ① (O) - 전체사회 가설 : 월슨은[♣니더호퍼, 로벅, 바커가(X)] **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** 경찰관은 자연스레 부패행위를 하게 된다고 보았다.<09·11·12·17승진·09·10·11·13.1·14.1·17.1·2채용>
- ② (X) - **썩은 사과 가설**은 전체경찰 중 일부 **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**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으로[♣구조원인가설(X)]<10·12승진·13경간·10·13.1·14.1·16.1·17.2채용> 부패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보다는 **개인적 결함에** 두고 있다.[♣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본다.(X)]<03승진·08·09·15.2·17.2채용>
- ③ (X) - 서먼의 ‘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’(작은 호의 가설)은 ‘공짜커피, 작은 선물 등의 부패 아닌 작은 호의가 나중에는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가듯 큰 잘못으로 연결된다.’는 이론이다.[♣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호의(X)]<11·12·13승진·12·15경간·08·09·10·11.1·13·15.2·17.1·2채용>
- ④ (X) - 구조원인가설은 **선배경찰(선임)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** 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이다.[♣썩은 사과가설은(X)]<01·02·04·08·10·12·13·17승진·12·15경간·08·09·11·13·14.1·15.2·17.1·2채용>

04.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. 과거에서 현재 순으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?<17.2채용>

- ㉠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
㉡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제정
㉢ 경찰위원회 신설
㉣ 「경찰공무원법」 제정
㉤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

① ㉡-㉠-㉤-㉣-㉢

② ㉡-㉠-㉣-㉤-㉢

③ ㉡-㉣-㉠-㉤-㉢

④ ㉣-㉡-㉤-㉢-㉠

정답: ②

해설: ㉡-㉠-㉣-㉤-㉢

- ㉠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 - 1966년<10.2·13.2·17.2채용>
㉡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제정 - 1953년<17승진·13.2·17.2채용>
㉢ 경찰위원회 신설 - 1991년<14.2·17.2채용>
㉣ 「경찰공무원법」 제정 - 1996년<12경간·17승진·10.2,11.1·17.2채용>
㉤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- 1974년<13.2·17.2채용>

05. 「경찰법」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<17.2채용>

-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·의결 기구이다.

- ②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,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
- ③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④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정답: ③

해설:

- ① (X) - 경찰위원회는 **경찰법에 근거**하여 설치된 **행정안전부 소속의 합의제 의결기관**으로 민주적 토론에 의한 결정으로 독립제 경찰관청의 단독결정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[♣경찰청에 설치(X)](경찰법 제5조 참조)<96승진·04·11.1·12.1·16.2·17.1·2채용>, 경찰위원회는 경찰활동의 타당성을 높이고, 경찰의 **민주적 운영과 정치적 중립, 즉 통제와 참여를 위해 설치된** 기구이다.<13경간·17.2순경>
- ② (X) - **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,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.**[♣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(X)](경찰법 제5조 제2항)<01·14·17승진·12·14경간·06·08·12.1·13.1·15.3·16.2·17.1·2채용>
- ③ (O) - 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(경찰법 제9조) : 1. 경찰의 **인사·예산·장비** 등에 관한 **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**에 관한 사항/ 2. **인권보호와 관련**되는 국가경찰의 운영·개선에 관한 사항/ 3. 국가경찰의 **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**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<17.2채용> / 4. **국가경찰임무 외의**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**업무 협조요청**에 관한 사항[♣경찰임무관련(X)] <17승진·12.1채용> / 5. **제주특별자치도**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**지원 협조**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<14경간> / 6. 그 밖에 **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**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**부친** 사항(제9조 제1항)
- ④ (X) - 경찰위원회 **의결정족수** : **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**으로 의결[♣제적 과반수 찬성(X)](경찰법 제10조 제2항)<13·17승진·13경간·15.3·16.2·17.2채용> [Ⓢ제과출과]

06.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<17.2채용>

- ① 「국가공무원법」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.
- ②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, 「경찰공무원법」은 국가경찰공무원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장관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- ③ 「국가공무원법」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- ④ 「공직자윤리법」상 등록의무자(취업심사대상자)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 다만,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정답: ②

해설:

- ① (O) - 국공법제58조①<14승진·15.2·17.2채용>
 ② (X) - 경찰공무원은 **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·감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**이 있을 때에는 **이의**를 제기할 수 있다.(경찰법제24조②)[♣경찰공무원법은(X)]<13승진·17.2채용>
 ③ (O) - 국공법제64조 제1항<07·12·14승진·12.3·16.1·17.1·2채용>
 ④ (O) -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<17.2준경>

07. 「경찰공무원징계령」상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.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<17.2채용>

- 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·의결한다.
 ㉡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.
 ㉢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㉣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.
 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평소 행실, 근무성적, 공적(功績), 뇌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.

- ① ㉠㉡ ② ㉡㉣ ③ ㉡㉤ ④ ㉡㉣㉤

정답: ②

해설:

- ㉠ (X) -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**소속 경감 이하**[♣경정이하(X)]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·의결한다.(경찰공무원징계령 제4조 제2항)<12.1·17.2채용>
 ㉡ (O) -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1항 <12경간·13·17승진·12.1·3·17.2채용>

- ㉔ (O) - 경공징계령 제11조 제1항 <12경간·13·14승진·08·17.2채용>
 ㉕ (O) - 경공징계령 제15조 제1항<17.2채용>
 ㉖ (X) -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징계심의대상자의 **평소 행실, / 근무성적, 공적, /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**을 고려하여야 한다.[♣고려할 수 있다.(X)](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)<17.2채용>

08. 「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」 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<17.2채용>

-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 ②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,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, 해양경찰청,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,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.
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정답: ③

해설:

- ① (O) -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<17.2채용>
 ② (O) - 경직법 제11조의2 제2항<17승진·15.1·2·3·17.2채용>
 ③ (X) -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**경찰청, 지방경찰청,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**한다.[♣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(X)](경직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)<15.1·17.2채용>
 ④ (O) - 경직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<17.2채용>

09. 매슬로우(Maslow)의 욕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<17.2채용>

- ① 매슬로우는 욕구를 생리적 욕구(Physiological Needs), 안전의 욕구(Safety Needs), 사회적 욕구(Social Needs), 존경의 욕구(Esteem Needs), 자기실현 욕구(Self-actualization Needs)로 구분하였다.
 ② 안전의 욕구는 현재 및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에 관한 것으로 신분보장, 연

금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.

- ③ 존경의 욕구는 동료·상사·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·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의 개선, 고충처리 상담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.
- ④ 생리적 욕구는 의·식·주 및 건강 등에 관한 것으로 적정보수제도, 휴양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.

정답: ③

해설:

①②④ (O) - Maslow<02·03·04·08·10·12·13승진·14경간·02·05·07·15.3·17.2채용>

③ (X) - 애정욕구(사회적 욕구)는 동료·상사·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·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의 개선, 고충처리 상담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.[♣존경의 욕구(X)]<15.3·17.2채용>

10. 「경찰장비관리규칙」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<17.2채용>

- ① ‘집중무기고’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·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
- ②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.
- ③ 경찰서에 설치된 집중무기고의 열쇠는 일과시간은 경무과장, 일과 후는 상황관리관이 보관·관리한다. 다만, 휴가·비번 등으로 관리책임자 공백 시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- ④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·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은 ‘변태성벽이 있는 자’, ‘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’, ‘사의를 표명한 자’, ‘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’이다.

정답: ④

해설:

① (O) -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2조 제2호<17승진·13.2·17.2채용>

② (O) -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5조 제3항<17승진·13.2·17.2채용>

③ (O) -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7조 제2항<17.2채용>

④ (X) - 즉시회수 대상(의무) : ① **징계의 대상**이 된 자(직무상 비위 등으로), ② 형사사건의 **조사대상자**, ③ **사의를 표명한** 자[♣변태성벽이 있는자(X)](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1

항)<14·15·17승진·13.2·17.1·2채용>

11.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<17.2채용>

- ① ‘억제이론’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.
- ② ‘치료 및 갱생이론’은 생물학적·심리학적 범죄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.
- ③ ‘합리적 선택이론’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합리적인 인간관을 전제로 하므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.
- ④ ‘일상활동이론’의 범죄 발생 3요소는 ‘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(motivated offender)’, ‘적절한 대상(suitable target)’, ‘보호자의 부재(absence of capable guardianship)’이다.

정답: ①

해설:

- ① (X) - ‘억제이론’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는[♣자유의지 인정하지 않는(X)] 비결정론적 인간관에[♠결정론적 인간관(X)] 바탕을 두고 일반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.[♣특별예방효과에 중점(X)]<04·05승진·04·06·12경간·05·09·17.2채용>
- ② (O) - 생물학적 · 심리학적 범죄이론에서는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을 통한 범죄의 사후대책 측면을 강조하며 치료 및 갱생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본다.<12경간·17.2채용>
- ③ (O) -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인간관을 전제로 하므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.[♠결정론적 인간관에 근거(X)]<10.2·17.2채용>
- ④ (O) -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의 3요소 : ① 범죄자(→ VIVA모델), ② 범죄의 대상, ③ 보호자(감시)의 부재[♣장소의 접근성(X), ♣범행의 동기(X)]<09·12경간·10승진·03·14.1·17.2채용>

12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<17.2채용>

- ①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·수입 또는 수출한 자(동법 제11조 제1항)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.
- ② 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·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(동법 제13조 제2항)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.
- ③ 법원은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「소년법」 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.
- ④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·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「형법」 제10조 제1항·제2항 및 제11조(심신장애자·농아자 감면규정)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정답: ④

해설:

- ① (O) - [♣미수처벌(O)]아청법 제11조 제1항, 제6항<17.2채용>
- ② (O) - [♣미수처벌규정 없다.(O)] 아청법 제13조 제2항<15경간·17.2채용>
- ③ (O) - 아청법 제21조 제1항<17.2채용>
- ④ (X) -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일정한 성폭력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)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의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(「형법」 제10조제1항·제2항 및 제11조)을 **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**[♣적용하지 아니한다.(X)](법 제19조)<11경간·17.2채용>

13. 「통합방위법」상 통합방위작전 및 경찰작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<17.2채용>

- ①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.
- ② ‘갑종사태’란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(大量殺傷武器)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·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.
-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·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.
- ④ ‘을종사태’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·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방경찰청장의 지휘·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.

정답: ②

해설:

- ① (X) - **국무총리 소속**으로[♣대통령 소속으로(X)] 중앙 통합방위협의회("중앙협의회")를 둔다.(통합방위법 제4조 제1항)<17.2채용>
- ② (O) - 통합방위법 제2조 제6호<12경간·13.1·14.2·17.2채용>
- ③ (X) - **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**[♣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(X)]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거나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될 때 필요한 **통제구역을 설정**하고, 통합방위작전 또는 경계태세 발령에 따른 군·경 합동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**출입을 금지·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.**[♣퇴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.(X)](위반 시 → 제24조 제1항에 의거 **처벌**)(제16조 제1항)<17.2채용>

- ④ (X) -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·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**지역군사령관의 지휘·통제**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.[♣지방경찰청장 지휘통제 하에(X)](제2조 제7호)<10·13·14승진·12경간·17.2채용>

14. 「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」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<17.2채용>

-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·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「경찰법」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②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에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
- ③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.
- ④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9세 이상인 사람이며,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.

정답: ③

해설:

- ① (X) -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{"청원주"}와 배치된 기관·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**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** 필요한 범위에서 「**경찰관 직무집행법**」에 따른[♣경찰법에 따른(X)]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.(청원경찰법 제3조)<15.2·17.2채용>
- ② (X) - 청원주는[♣관할 경찰서장은(X)] 징계사유가 발생하거나 관할 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(청원경찰법 제5조의 2 제1항)<17.2채용>
- ③ (O) -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<17.2채용>
- ④ (X) - **임용자격 : 18세 이상 남녀**(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)[♣19세 이상(X)](시행령 제3조 제1호)<01·08승진·08·17.2채용>

15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<17.2채용>

- ① ‘자전거횡단도’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.
- ② ‘교차로’란 ‘+’자로, ‘T’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(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

서는 차도를 말한다)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.

- ③ ‘길가장자리구역’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.
- ④ ‘안전표지’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·규제·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·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.

정답: ③

해설:

- ① (O) - 도로교통법 제2조 제9호<17.2채용>
- ② (O) - 도교법 제2조 제13호<13.2·17.2채용>
- ③ (X) -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.[♣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(X)]
(도교법 제2조 제11호)<11경간·14.2·15.3·17.2채용>
- ④ (O) - 도교법 제2조 제16호<17.2채용>

16. 「도로교통법」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<17.2채용>

- ① 19세 미만(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)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.
- ②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(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)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.
- ③ 듣지 못하는 사람(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·특수면허만 해당한다),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(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·특수면허만 해당한다)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.
- ④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.

정답: ①

해설:

- ① (X) - **18세 미만**(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**16세 미만**)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.[♣19세미만(X)](제82조 제1항 제1호)<12.2·3·17.2채용>
- ② (O) - 도교법 제82조 제1항 제6호<11.2·12.3·17.2채용>

③ (O) - 도교법 제82조 제1항 제3호<04.12.3·17.2채용>

④ (O) - 도교법 제82조 제1항 제2호<17.2채용>

17. 「보안업무규정」상 신원조사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.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<17.2채용>

- ㉠ 신원조사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.
㉡ 국가보안시설·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(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을 포함한다)은 신원 조사의 대상이 된다.
㉢ 공무원 임용 예정자와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.
㉣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.
㉤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,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① ㉠㉡

② ㉠㉢㉣

③ ㉡㉢㉣

④ ㉠㉢㉣㉤

정답: ③

해설:

㉠ (X) - 신원조사는 **국가정보원장이 직권**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**요청**에 따라 한다.[♣관계 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(X)](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2항)<17승진·17.2채용>

㉡㉢㉣ (O) - 신원조사 대상(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3항)<17승진·12.3·13.2·17.2채용> : 1. **공무원임용예정자** [공무원임용예정자는 신원조사 대상 아니다.(X)]<12.3채용> / 2. **비밀취급인가예정자** / 3. **해외여행**을 위하여 「여권법」에 따른 여권이나 「선원법」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사증(査證) 등을 발급받으려는 **사람**<17승진> / ※ **입국하는 교포를 포함**한다.[♣입국하려는 교포 제외(X)]<13.2채용> / 4. 국가보안시설·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(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.[♣제외한다.(X)])<17승진·17.2채용> / 5.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<13.2채용> / 6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㉤ (X) -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**통보하여야** 한다.[♣통보할 수 있다.(X)](보업규 제34조 제1항)<17승진·17.2채용>

신원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**관계기관의 장**은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**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** 한다.(보업규 제34조 제2항)<17승진·13.2·17.2채용>

18.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<17.2채용>

- ① ‘주관자(主管者)’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.
-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관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.
- 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12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.

정답: ③

해설:

- ① (X) - ‘주최자’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. [♣주관자(X)](제2조 제3호)<09·13경간·13·14·15.1·16.1·17.2채용>
- ② (X) -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. [♣임명하여야(X)](제16조 제2항)<01·13승진·13경간·12.1·17.2채용>
- ③ (O) - 집시법 제6조 제3항<09경간·05·10·17승진·17.2채용>
- ④ (X) - (옥외집회·시위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므로),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. [♣미비점 있으면 보완서류를 받은 후 교부(X), ♣접수증을 12시간 이내에 내주어야(X)](집시법 제6조 제2항)<11.1·13..2·14.1·17.1·2채용>

19. 「보안관찰법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<17.2채용>

-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.
-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·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④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7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, 여행예정지 등을 지구대·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정답: ④

해설:

- ① (O) - 보안관찰법 제3조<07·13·17승진·11·13경간·03·05·10·11·12·13·14.1·2·15.1·3·16.2·17.2채용> [●해금3집]
 ② (O) -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<08·09승진·03·12.2·13.1·14.1·17.1·2채용>
 ③ (O) - 보안관찰법 제18조 제1항<01·04승진·17.2채용>
 ④ (X) -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 또는 10일 이상[♣7일 이상(X)] 여행하고자 할 때, 미리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(보안관찰법 제18조 제4항)<01·04·13승진·17.2채용>

20. 「출입국관리법」상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<17.2채용>

- ① 감염병환자, 마약류중독자,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사람
 ③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,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, 그 밖에 구호(救護)가 필요한 사람
 ④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

정답: ②

해설:

- ①③④ (O) - 입국금지 사유(출입국관리법 제11조)<08·10·17.2채용> : ① 공중위생상 위해 우려 ☞ 감염병환자, 마약류중독자,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<10.2·17.2채용> / ② 총포·도검·화약류 관련 ☞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에서 정하는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/ ③ 이익과 안전을 해칠 우려 ☞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/ ④ 경제질서 등과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 ☞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<10.2·17.2채용> / ⑤ 구호를 요하는 자 ☞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,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, 그 밖에 구호(救護)가 필요한 사람<10.2·17.2채용> / ⑥ 강제퇴거 후 5년 미경과 ☞

★ 합격을 보장하는 한상기 전문경찰학 ★

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/ ⑦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, 민족, 종교, 국적,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·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/ ⑧ **법무부장관이**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**인정**하는 사람[●**공총이 경선구강 5인**] / [♣상륙허가 없이 상륙 혹은 상륙허가조건위반(X)] /

- ② (X) - 입국금지사유 : ⑥ **강제퇴거 후 5년 미경과**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[♣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사람(X)]<17.2채용>